

#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1178

제출연월일 : 2009. 10. 15.

제출자 : 고성군수

## 1. 자치법규명 :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

## 2. 제정이유

- 가. 새마을운동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실현하는 신 국민정신 운동으로 승화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로 확산하고
- 나.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 3대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 조직을 육성해 나가고자 함.

## 3. 주요 내용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
  -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 기타 우수회원 표창, 사기진작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9-702호(2009. 8. 27 ~ 2009. 9. 16.)
  - 제출 의견 : 없음
- 나.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 다. 합 의 : 관련실과 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 5. 본문내용 :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고성군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 지도자고성군협의회, 고성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고성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상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5. 기타 우수회원 표창, 사기진작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